

양돈계열화사업

지원실적과 향후 계획

1. 추진실적

양돈계열화 사업은 90년 이전까지는 유전자원, 제일종축과 같은 종돈장이 내수 또는 수출용 원료돈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UR협상 진행으로 단계적인 돼지고기의 수입개방이 예견됨에 따라 양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면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정부정책사업으로 추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김동훈

농림부 축산경영과

〈표1〉 양돈계열화 지원현황

계열화사업은 '91년 사업추진 이후 양돈산업의 상황에 따라 다소의 변화는 있었지만 일관되게 전문경영체가 종돈에서 돼지고기 유통에 이르는 전과정의 경영을 책임지고 사육농가는 전문경영체와 계약사육하거나 전문경영체의 돼지를 위탁사육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간의 양돈계열화 사업은 계열주체의 경영 형태에 따라 경영주체가 종돈, 사료, 도축가공 및 돼지고기 판매를 전담하

선정년도	개소수	사업비(백만원)	
		계	용자
'91	1	4,950	2,500
'92	1	1,302	650
'93	2	9,054	5,778
'94	3	9,036	5,555
'95	4	22,534	13,517
'96	1	19,286	13,500
'97	1	5,640	3,948
'98	3	18,043	2,187
계	16	95,413	61,730

는 완전계열화와 별개의 경영체가 서로 연계하여 사육, 사료 공급 및 도축 등을 분담하는 부분계열화 및 여러 농가가 조합을 구성하여 돼지사육, 사료조달은 물론이고, 가공·유통분야에도 참여하는 조합형 계열화로 진행되어 왔다.

'91년 양돈계열화 사업에 대한 정책자금이 최초로 지원된 이후 '98년 현재까지의 양돈계열화 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총 16개소에 61,37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2. 추진성과 및 문제점

가. 추진성과

양돈계열화사업의 추진성과는 사업이 '94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대부분의 계열화업체가 경영 초기단계이거나 추진단계로서 그 성과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따라서 그간에 추진되어 왔던 경쟁력 제고사업의 전체적 맥락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우선 돼지사육기반 시설의 현대화와 규모화를 들 수 있다. 종전의 개별농가 중심의 일관경영 사육체계는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사육규모 확대와 그에 따른 시설현대화를 개별농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 그러나 계열화 사업을 비롯한 양돈단

지 조성 등을 통한 경영의 집단화로 개별경영시의 투자의 한계성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다.

농가의 규모화, 전업화 추세를 살펴 보면 전체 돼지 사육농가 수는 '92년 98천호에서 '98년 27천호로 감소한 반면 호당 사육두수는 55두에서 279두로 증가하는 등 사육농가의 규모화가 뚜렷히 나타났고, 천 두 이상의 돼지를 사육하는 전업 규모의 농가도 '92년 630여호에서 '98년 1,900여호로 증가하였다. 전체 돼지사육 두수중 전업 규모농가 돼지사육 두수 비율 또한 7%('92)에서 52%('98)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양돈계열화의 또 다른 성과는 전문가공업체와 수직계열 또는 계약생산에 의한 안정된 판로확보로 농가가 안심하고 규모를 확장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규모확장의 결과로 '99년 9월 현재 돼지사육 두수는 780만두에 이르고 있으며, 돼지고기 수출 또한 비약적으로 확대되어 돼지계열화 사업 추진 당시인 '93년 11천톤에서 '98년 88천톤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계열화에 의한 원료돈의 규격화와 품질향상 및 가공 기술의 일원화로 브랜드 돼지고기와 냉장돼지고기의 유통이 활성화 되어 돼지고기의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었다.

양돈계열화는 번식돈의 회전 수 및 이유자돈수 증대에 따른 생산성이 제고되어 자돈생산비를 절감하고, 사료 공동구입에 의한 사료비 절감, 시설현대화에 의한 노력비 절감으로 개별농가의 일관경영에 비해 생체 kg당 7.7~10.4%의 생산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농가와 일반농가의 생산기술 수준은 번식돈의 연간 회전 수가 일반농가에 비해 0.01~0.12회전 더 높아 자돈생산을 경제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비육돈의 일당 증체량 또한 일반농가에 비해 2.3~3.1%가 높아 생산성이 높았다(농진청 연구 결과).

나. 문제점

'99년까지의 양돈계열화사업은 낙후된 국내 양돈기반의 규모화와 전업화에 의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계열주체 또는 계열화 농가의 생산설비 확충 및 개보수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여 왔다. 이와 같은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집중으로 규모화와 전업화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으나 자본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계열주체의 자금회전 능력을 저하시켜 자금 고갈로 인한 운영난을 겪는 업체도 발생하였다. 물론 계열주체의 운영난은 '97년의 예상치 못한 IMF사태로 인한 환율상승에 의

한 시설자재비와 사료비의 상승 등에 의한 바도 크다.

계열주체의 운영비 부족으로 시설 완료 후 돼지 입식, 사육 등 초기 경영의 어려움과 전업화, 규모화에 상응하는 경영능력 및 농장경영의 전산화가 미비하여 경영이 안정화되는 데에 장애가 되고 있다.

양돈계열화 사업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계열주체와 계열요소의 연합형태에 따라 돼지 사육에서 생산물 유통까지 통합경영하고 농가는 소정의 위탁사육 수수료를 지급받는 완전계열화와 계열주체가 종돈장 또는 사료공장 등 계열요소 일부분을 소유하고 나머지 요소는 계열주체와 계약에 의해서 납품하는 형태의 부분계열화가 있다.

계열화 사업이 목표로 하는 계열주체의 일관경영에 의한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과 생산물의 품질향상은 관리주체의 통제가 분명한 완전계열화 유형에서 보다 더 효율적이나 지금까지 지원된 16개 계열주체 중 완전계열화 주체는 3개소에 불과하여 계열화에 의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완전계열화 추진이 부진한 이유는 계열주체가 종돈장에서 돼지고기 가공공장에 이르는 시설투자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종

돈구입 및 계열농가에 지급하는 약품비, 사료비 및 위탁수수료 등 운영비에도 자금이 소요되어 계열주체가 완전계열화를 꺼리기 때문이다.

양돈계열화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계열주체는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규격, 품질 및 가격에 대한 정보를 각 생산요

**2000년 계열화 자금지원은
가급적 신규 시설투자를
지양하고 기존의 단지나
품질경쟁력제고사업 지원농가의
시설을 활용하는 업체를 우선
지원하여 계열주체의 과다한
고정자본 투자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소에 피드백 할 수 있고, 생산된 제품을 브랜드화 하여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축산물 종합처리장이나 그 간의 전근대적인 돼지고기 유통으로 규모화 된 종합처리장의 수가 적고, 기존의 종합처리장 또한 계열화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과 돼지사육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부족으로 돼지 계열화사업 참여가 저조하였다.

3. 개선방향

2000년 계열화 자금지원은

가급적 신규 시설투자를 지양하고 기존의 단지나 품질경쟁력제고사업 지원농가의 시설을 활용하는 업체를 우선 지원하여 계열주체의 과다한 고정자본 투자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계열주체 또는 시설설치를 완료하고 돼지를 입식 중에 있는 신규 계열주체에 대해서는 계열화 사육비 즉 자돈입식비, 사료비, 약품구입비 등 경영비 성격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계열유형을 가급적 부분계열에서 완전계열로 전환, 계열화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축산물 종합처리장 중심의 계열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1년까지 완공되는 10개소의 축산물종합처리장의 계열화를 중점적으로 육성하여 양돈업계의 당면과제인 규격육과 고품질의 돼지고기를 생산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돼지고기 수출과 국내 돼지고기 유통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4. 2000년도 돼지계열화 사업 추진

가. 시책 및 추진방향

○수출산업과 연계하여 계열주체를 육성

○계열사업체의 신규지정을

지향하고, 기준계열사업체의 경영개선 방향으로 추진

○완전, 부분계열화 및 조합형 계열화를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계열 사업 추진

나.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00~2001년
(신규사업은 3년차로 추진)

○지원내용 : [표2] 참조

○가축계열사업형태 : 완전계열화, 부분계열화, 조합형계열화

○자금지원대상자 :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계열화사업자로 선정된 자 또는 축산물종합처리장(이하 축협중앙회·한냉포함)과 연계·

참여한 업체

다. 자금지원방법

○사업비는 계열주체의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예산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이미 지원 받은 업체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신규사업 신청절차 및 방법에 의함.

- 사업 완료 예정년도에 추가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으나 연말까지 미완료시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양돈계열화 사업의 경우 축산물종합처리장과 연계할 경

우에만 지원

○민원발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사업주관 기관은 추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고 민원 해결 후 다음연도에 예산을 재신청

- 단 재신청 시 대상지 이외 사업계획 변경이 없을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계열농가 생산시설은 축산종합자금사업의 시설자금지원 또는 가축계열화사업에 포함하여 계열주체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계열주체를 통하여 지원할 경우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대상농가를 선정하여야 함.

- 계열농가가 이미 다른 축산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농가당 축산종합자금지원사업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

○계열농가가 계열주체를 통하여 생산시설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축산종합자금제 시설지원의 일반농가 지원내용과 동일 적용

○계열주체에게 계열화사업비를 지원할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계열주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수출규격돈 생산 소요액의 50% 범위내에서 자금지원액을 결정하여 지원

- 계열화사업비 집행계획서 작성방법

· 지원대상업체 : 축산물종

합처리장 및 동 처리장과 연계한 계열주체로서 규격돈을 생산하는 업체

· 지원내용 : 계열주체 및 계열농가(양돈단지 포함)가 운영하고 있는 양돈장에서 소요되는 종돈입식 또는 자돈구입비, 사료비, 약품비, 위탁사육수수료

· 작성내용 : 계열화 사업체계도, 계열농가명단, 계열농가별 사육형태 및 사육 두수, 월간 및 연간생산·입식·출하두수, 수출규격돈 생산계획 두수, 1회전에 소요되는 사료비 및 약품비, 연간 종돈입식비, 기타 운영사항

라. 사업시행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에 의한 추진 일정을 수립하여 사업주관 기관에 제출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자가 제출한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점검

○생산한 축산물에 대한 상표등록 또는 품질인증 등을 실시하여 자기상표(고유 브랜드)로 판매할 수 있어야 함.

○계열농가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요원 확보

- 축산계열대학 졸업자이며, 현장경험이 있는 전문경영 및 기술지도요원을 2명 이상 확보하여야 함.

●양돈계열화사업 실태 분석과 개선점●

특집

○ 사업계획의 조정 :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계획 조정 및 확정

(2) 계열화업체의 준수사항

○ 협의체 구성

- 사업주관기관은 계열업체 별로 계열사업 참여농가 등으로 가축계열사업 협의체를 구성 운영

- 협의체는 지역별 농가수를 감안하여 구성하고 수수료 지급금액, 자재공급, 농가와의 계약 등 주요사항을 계열사업주체와 협의 결정

- 사업주관기관은 표준계약서 작성률 권고하거나 사고분쟁의 조정, 계약체결, 계약사항의 이행 등을 지도

○ 계열화업체의 이행사항

- 계열사업주체로 지정된 자는 계열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에 관한 정관을 작성,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 계열사업주체는 참여농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열농가의 사육시설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을 위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함.

-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계열주체는 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사육두수 조절 및 수매·비축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계열사업주체는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사업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계열주체는 계열농가에서 생산한 가축에 대하여 판매대책(자체구매, 판매일선)을 구체적으로 수립 시행하여야 함.

- 생산계열사업 위주의 부분 계열화 업체는 자체가공·판매 시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수출가공업체 등과 계약하여 단계적으로 완전계열화사업 형태로 전환 추진

- 양돈 계열주체는 계열농가 선정 시 양돈단지 등을 우선 선정하여 기존시설을 활용하고 규격돈 생산기반을 확보

- 양돈 계열주체가 운영하는 종돈장의 관리자와 계열농가는 「양돈전문기술교육」을 필히 이수하여 농가경영기술을 향상시켜야 함.

5. 행정사항

가. 지원집행 세부요령(사업주관기관)

○ 토목·건축공사는 경쟁입찰(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로 시공업체를 선정토록 하고 시·군에서 입회하여 지도·감독

- 시공업체 선정·계약시에는 시·군에서 입회하고 응찰업체 및 낙찰업체를 공개하는 등 지도·감독

- 1개 사업이 2~5개로 분리 계약될 경우(공정에 따라 분리될 경우)에는 선정시공업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시·군 관계관이 공사실적 확인

○ 공사감리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에서 준공까지 감리 실시

○ 자금지원액에 비례한 자부담 집행액의 적정성 여부확인

○ 자금지원시 담당기술직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확인후 자금집행 통보

○ 기계, 장비구입비 및 사업비 집행시는 관련 증빙자료 비치(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주관기관이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간이세금계산서 및 간이영수증을 제출할 경우는 사유서를 첨부)

○ 계열주체가 계열화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세부집행실적은 사업주관기관인 시·도지사(시·군 경유)에게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 자금집행과 정산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 기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자료 비치

○ 지원대상자 및 가족의 자가노력비는 사업비 정산대상에서 제외



◀ '91년 양돈계열화 사업에 대한 정책자금이 최초로 지원된 이래 '98년 현재까지의 양돈계열화 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총 16개소에 61,37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을 경우에는 축산종합자금사업으로 전환하여 관리하고 회수 대상에서 제외

6. 2001년 사업신청 및 대상자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나. 신청절차

사업계획서 작성→관할 시·군(1월 말까지)→시·도→축협 중앙회 사전심사(2월 말까지)→시·도(직합 또는 보완된 사업계획)→예산신청(3월 말까지)

다. 대상자 선정

(1) 신청자격

○ 축산법, 축협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협약·등록된 부회업, 종축업 및 도축(도계)업, 축산물종합처리장(육가공업 포함), 배합사료제조업을 하는자 및 축산업협동조합(지역, 업종) 및 중앙회

- 축산관련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자기 사업장 건설대상 토지가 확보된 자(축산단지조성사업의 부지확보 조건 준용)

- 가축별로 다음에 정하는 계열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함.

○ 장비, 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자가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시행 토록 지도하여 부실공사를 방지

나. 사업계획 변경

○ 주관기관 : 시·도지사
○ 사업계획 변경 시에는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사전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임에 유의하여 당초 사업계획서를 준수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와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다. 사후관리

○ 사후관리는 '91년 이후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은 대상자로 하며 자금상환이 만료되는 연도까지로 한다

○ 사업계획서 승인내용과 일치하게 세부사업을 추진하였는지 확인

○ 계열주체는 계열농가에 대한 규격품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 및 경영지도

○ 사업주관기관은 연 2회 이상 계열화 사업자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함

○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기간 내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지시를 한다(추진중인 사업은 매분기별 1회 이상 점검)

○ 시정지시

- 2차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중단한다

- 3차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열화사업자 지정을 해지하고 지원된 자금을 회수 조치 한다. 다만, 이 경우 계열농가에게 지원된 생산시설자금이 있

●양돈계열화사업 실태 분석과 개선점●

특집

〈표2〉 가축계열화사업자금 지원대상 및 내용

구 분	지 원 범 위	지 원 조 건	비 고
1. 생산기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돈 및 모돈생산시설, 종돈장 시설 ○ 종계장 및 부화장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의 70% 이내 - 연리 8%(축협 등 생산자단체 5%) -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2. 계열주체사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주체 적영 비육돈·육계 사육시설 - 사무실, 관리사는 자담으로 추진 		가축을 도축, 도계 및 가공하여 수출하는 계열주체만 지원
3. 계열농가생산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사 및 가축사육에 필요한 부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의 70% 이내 - 연리 5% -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축산종합자금 사업과 동일
4. 가공시설(육가공 공장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장시설 및 부대시설 (오페수처리시설 포함) 		
5. 유통·판매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판매장 및 부대시설 ○ 냉장·냉동·물류 등 유통·판매시설 		부지·건물 구입비 및 임차료는 제외
6. 계열화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종합처리장과 연계된 계열주체 ○ 자돈구입비, 사료비, 약품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액 50% 이내 - 연리 8%,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수출 규격 돈 생산에 한함 (2000년)
7. 도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계장 및 부대시설 (오페수 시설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의 70% 이내 - 연리 8% (축협 등 생산자단체 5%) -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수출 용 닭 (2.5~3.0kg) 을 도계하여 수출하는 주체에만 지원

*1. 사료제조시설, 상기 지원내용이외 기타시설 및 재료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2. 닭계열화사업비는 2001년부터 지원계획임
(수출용 닭을 생산하는 계열주체를 우선지원)

- 돼지 :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동 처리장과 연계하여 계열화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자
- 육계 : 종계 및 부화장, 배합사료공장, 도계장, 육가공장 사업 중 2종 이상 보유자
- 기타

-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소지가 없어야 함
- 용자금에 대한 담보능력 및 자부담, 운영자금에 대한 자금능력이 있어야 함
- 육계의 경우 2년 이상 자체 계열화사업 실적(사업신청

전년도 계약생산 실적이 50만수 이상)이 있어야 한다.

(2) 우선순위

○ 사전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

-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동 처리장 연계하여 계열화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자

- 축산단지 등 기존시설과 연계·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자

- 도축장, 사료공장, 종돈장, 육가공장 및 유통판매 시설 중 2종 이상을 보유한 계열주체

- 계열화사업을 지정받은 자로서 재해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자

- 생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

(3) 신청절차

○ 계열사업자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사업장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격요건 및 사업장 건설에 따른 법적제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시·군·구 농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

○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의

견서를 붙여 축협중앙회의 사전심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 농림부장관에게 예산을 신청(신청기한 염수)

(4) 사업타당성 검토

○ 사업계획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축협중앙회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은 학계, 축협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축협중앙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축협중앙회의 사전심사 방법은 농림부장관이 승인한 “가축계열화 사업계획서 사전심사 요령”에 의거 실시하고,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심의한다.

- 주요심사내용 : 계열주체 자격요건, 부지확보여부 지역주민 민원발생 및 법적 제한사항 유무, 계열요소 구비사항, 사업계획서 타당성, 계열농가와의 계약여부, 경영기록사항, 자금상환능력 등

○ 축협중앙회장은 심사결과 지정요건에 맞지 않거나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적합”, 지정요건에 적합하고 사업계획이 타당한 경우 “적합” 판정을 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에 보고

- 심사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완 요청

○ 시·도지사는 심사결과 “적합”한 경우 농림부장관에게 예산을 신청

-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자로부터 보완하게 한 후 심사하여야 하며, “부적합” 판정의 경우에는 동 사유가 충족되기 이전에는 다시 심사 요청할 수 없음.

○ 수출업체와 연계한 계열주체 또는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동 처리장과 연계한 계열주체는 축산물 생산을 위한 자축구입비 및 사료비 등 계열화사업비를 신청 할 수 있다(표2 참조)

- 신청자격 : 수출을 하기 위하여 축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계열주체

- 지원대상 : 계열주체 및 계열농가(양돈단지 포함)가 운영하고 있는 양돈장에서 소요되는 자축구입비, 사료비, 약품비, 위탁사육수수료 등

- 신청범위 : 지원대상 사업비의 50% 이내

- 신청방법 : 계열주체는 사업주관기관(시·군 경유)에 계열화 사업체계도, 계열농가명단, 계열농가별 사육형태, 사육두수, 연간생산·입식·출하두수, 1회 전에 소요되는 사료비 및 약품비 등을 제출

(5) 계열화사업자 지정(표2)

○ 사업주관기관은 자금지원 계획이 확정되거나 시·도지사가 계열화사업 요건을 갖춘 자라고 인정하는 경우 가축계열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 본 사업추진요령 시행 이전에 가축계열화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지원받은 자는 본 요령에 의하여 계열사업자로 지정을 받는 것으로 본다.

라. 기타사항

○ 대상축종 : 돼지, 육계(산란계는 제외)

○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경우 계열화 요소별로 현재까지 갖춘 것, 연도별 새로 갖출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신규 및 보완사업)

○ 계열사업 완성년도, 연도별 계열농가 확보 및 처리두수, 연도별 시설 설치계획, 시설별로 자금투자계획(축발기금, 자부담구분)을 명시

○ 사업추진규모 : 연간 비육돈 생산·처리능력 45천두(1.5천두×2회×15호) 이상

○ 사업추진 기간내 확보해야 할 사항 : 상기 규모이상의 비육돈을 생산할 수 있는 모돈 및 자돈생산기반시설

○ 2000년도 사업추진요령에 준하여 세부사업별 지원비율, 단가 등 지원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표2>**양돈**